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June 2021

Contents

GAAP

02 IAS 12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GAAS

06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07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TAX

10 최신 세무뉴스

11 최신 세무예규판례

Hot Topic: ESG

14 국내 ESG Regulation

15 PwC ESG Insights

01

GAAP
회계



IAS 12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1. 개정 배경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5월 IAS 12 '법인세'의 개정으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최초 인식 예외에 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거래의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은 리스료를 지급하는 시점인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후 사용권자산은 정액으로 상각되고 리스부채는 지급시 차감되면서 금액이 다르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를 계속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세효과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기준에 따르면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초 인식 예외로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i)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ii)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이고,
- (iii) 거래 시점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

따라서, 단일거래에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인식요건 충족 시)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적용 사례

개정 기준의 적용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건물을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말 100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스개시일에 회사는 리스부채 435(리스료의 현재가치)와 사용권자산 440(리스부채 435와 추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 5를 합한 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세법상 리스료는 리스료부채의 지급시에 공제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지출시에 공제되며, 적용세율은 20%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개정 기준을 이 사례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사용권자산	440	–	(440)	(88)
– 리스개설직접원가 ^{(*)1}	5	–	(5)	(1)
– 리스부채 최초 측정 금액 ^{(*)2}	435	–	(435)	(87)
리스부채 ^{(*)2}	435	–	435	87

(*)1) 사용권자산 중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지급은 지출시에 세무상 공제되는 경우이므로 사용권자산의 금액을 구성하지만 과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부금액 5와 세무기준액 0과의 차이인 가산할 일시적차이 5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2)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으로 인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경우,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향후 리스부채의 지급시 공제되므로 0이 되고 사용권자산의 세무기준액은 0이 되어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며, 개정 기준에 따라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합니다.

4.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완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개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에 다음 항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인식 요건 충족시)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며, 누적 효과는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자본의 다른 항목)에 조정합니다.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그리고

(2) 복구충당부채와 이에 상응하여 관련 자산의 원가로 인식된 금액

즉, 리스와 복구충당부채로 인한 거래는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개시일에 누적효과를 조정하며, 다른 거래로 인한 부분은 이전 거래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없이 비교표시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전진 적용하게 됩니다.

5. 실무에 미칠 영향

이 개정으로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관련한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교표시되는 기간 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와 복구충당부채로 인한 거래 외에도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더 이상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인식 요건 충족시)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 기준은 2023년부터 의무 적용되지만 조기 적용이 가능한 기준서이므로, 의무 적용 시기 전에 조기 적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중점추진사항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 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으로 회계분식 위험억제

- 회계분식 고위험회사(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무자본 M&A, 최대주주 변경, 과도한 자금 조달), 장기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기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을 제고,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을 심사대상 기준에 반영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및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 운영
-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
- 중점심사대상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 부여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전담부서 신설로 감사품질 제고 및 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 수행

-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확대하여 감리주기를 단축(3년)하여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 제고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
-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리
-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및 감사인 등록제도 등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제재절차 합리화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 현장점검을 보다 활성화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
- 감리시 적용되는 감사인의 중요성금액 관련 적용 시점, 합리성 검증 기준 등 적용방안을 마련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산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관련 노하우 축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분석 등으로 시사점 등을 실무가이드·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안내
-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감사인에 안내

2. 심사·감리 실시대상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48사) 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

- **표본심사 대상**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 선정

- **협의심사 대상**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 예상

*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중요성 4배 이상 금액의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GAAS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9년 4월부터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효율성 추구를 위하여 舊 '심사 감리'와 달리 위법동기가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하는 반면, 중대한(고의/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감리'를 실시하고 엄중한 제재로 부정유인의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운영성과

- **심사실적**

심사제도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이 '20년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표본심사 96사, 협의심사 57사로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입니다.

-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표본 34.4%, 협의 94.7%)하며,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처리기간**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주의/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 **지적유형**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입니다.

3. 주요지적사항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의 주요 지적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세부 내용
수익인식기준	매출 기간귀속, 진행기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파생상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연결재무제표	연결 범위, 연결내부거래제거, 해외증속회사 거래 등
자산손상	증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등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
유동·비유동항목 분류	매도가능증권, 차입금 등
충당부채·우발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지급보증채무 등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손실충당금	증속기업 대여금, 선급금
기타	개발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주요 고객 정보 공시 등

4. 향후 계획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하며,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례를 회계포털에 DB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03

TAX



최신 세무뉴스

21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바, 5월 2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① 반도체 등 핵심주력산업들의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②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성 강화 ③ 불요불급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및 변칙적 탈세 행위 대응 등 과세기반 정비 등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일반 투자와 공제율 우대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구분하여 2단계로 세제지원 하던 것을 3번째 단계로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 핵심전략기술(가칭)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 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시장선점 및 교역 확대,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강화 및 양국간 협력 방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미(과소)신고자는 과태료,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무예규판례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개정전, 이하 동일함) 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은 양도일 이전 · 이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에 그 가액의 일정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2021. 2. 17. 개정 전)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었음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사안은 최대주주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종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가액, 즉 양도일 이전 ·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에 일정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납세의무자는 쟁점 규정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일치시키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점규정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후, 법인세법상 시가인 종가로 거래하지 않은 이번 사안의 경우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양도일 이전 · 이후 2개월 간의 평균가액에 일정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2016두63439, 2021. 5. 7.)

이번 대법원 판결은 쟁점규정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는 규정이 제167조 제7항에 신설되었고,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중 상장주식의 시가 부분도 개정되었는 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에 따른 취득세 추징 여부

법인세법은 완전모자법인간 또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간 합병(이하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이라 함)의 경우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적용도 배제하고 있음(법법 §44 ③ 및 법법 §44의 3 ③)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서 일정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되, 3년 이내에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지특법 §57의 2 ①)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인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적격합병의 사후관리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취득세 감면세액의 추징에 있어서는 적격합병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행전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추징 규정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사후관리의 각 요건만을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의 경우로서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음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 3. 23.)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 여부 판단시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는 바, 관련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이번 해석과 더불어 유사한 취지의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2017지0241, 2017. 5. 17.)

A vertical photograph showing an aerial view of a forest on the left and a body of water on the right. The forest is dense with green and yellowish trees, while the water is a deep, clear blue. The transition between the land and water is a rocky shoreline.

Hot Topic: ESG

국내 ESG Regulation

환경부, 상장사에 대한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 최근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환경정보를 작성 및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제16조의8 제1항제2호, 시행일: 2021. 10. 14)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은 환경부가 시행령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개정법에 따른 공개의무가 처음 적용되는 2022년에는 2조 이상 상장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공개대상 기업은 환경관리를 위한 목표, 주요활동 계획 및 성과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공개 · 검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 ·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 ·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13. >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

[본조신설 2011. 4. 28.]

[시행일: 2021. 10. 14.] 제16조의8

PwC ESG Insights

ESG: Identifying metrics that matter most

2021년에 블랙록이 CEO들에게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사업모델이 넷제로 경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공시기준과 프레임워크의 흥수 가운데 어떠한 비재무보고 공시 기준을 채택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의 3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매트릭스는 무엇인가”

재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비재무보고의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공시 내용은 기업의 전략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블랙록의 서한 역시 구체적으로 사업모델이 넷제로 경제와 어떻게 일맥상통하느냐를 공시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트릭스는 무엇인가”

UN SDG나 WEF/IBC 등과 같은 프레임워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시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지난 1년 동안 기업의 투자자들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중요한 관심분야 위주로 보고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는 준비되어 있는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시 가능한 것에서 출발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재무보고는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가 재무보고에 사용되는 데이터만큼 강력한 경우에만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재무보고 수준으로 비재무정보가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정보가 정확하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통제 절차, 내부감사, 외부감사 및 기타 보안 관련 시스템 등)이 비재무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SG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제 자본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원문 링크



Nadja Picard

Partner
PwC Global Reporting Leader

Don't wait until the SEC staff asks you about climate chang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웹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내용과 SEC filings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하고, 기업공시 정보의 질과 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발행 기업은 투자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성과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며, SEC는 연방정부법에 따른 공시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지난 2월에 SEC는 기후 및 ESG TF를 구성하여 현 규정 하에서 기업공시에 중대한 차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후 공시 관련 2010 Guidance에 대한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Regulation S-K 상 공시를 요하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국제 협정

-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 조약이나 협정
(예: 교토의정서, EU 배출량 거래 시스템 등)

규제나 비즈니스 트렌드의 간접적 영향

-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수반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 경쟁 제품보다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경쟁 증가
- 대체에너지의 발전이나 송전에 대한 수요 증가
- 채굴 업무나 관련 기자재의 유지 보수와 같이 탄소 기반 에너지 관련 서비스의 수요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

- 심각한 기후재난과 기후변화의 영향이 기업의 운영과 성과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원문 링크

SEC는 MD&A에서 주요 성과지표와 측정지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0년 2월에 발효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측정지표가 오인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측정지표의 정의 및 산출 방법
- 해당 지표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이유
-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ESG 주요 뉴스

Global 공시 프레임워크
(SASB, IIRC) 통합

[SASB, IIRC merge to
form Value Reporting
Foundation](#)

Investment & Pensions Europe
2021.06.10

국내 ESG 평가 강화 및
신규 도입

[KCGS 'ESG 모범규준 개정안'
리더십 · 거버넌스 신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아이뉴스24
2021.06.09

[신한銀,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ESG경영 강화](#)

아시아경제
2021.06.11



Contacts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ESG

권 미 엽, Partner

+82 2 709 7938

miyop.kwon@pwc.com

www.samil.com

S/N: 2105A-NL-001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